

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
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안광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9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9월 24일

발 의 자 : 안광석 의원(1명)

찬 성 자 : 노승재, 김용연, 김희걸,
김용석, 김 경, 유 용,
김호평, 황규복, 김화숙,
유정희, 김제리, 김인호,
김생환, 김춘례, 김동식 의원
(15명)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0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“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함.
- 나. “같은 법 시행령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으로 변경함(안 제6조제1항).
- 다. 제12조를 삭제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
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
위 등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
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59조,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대상공
사의 범위 및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같은 법 시행령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
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제14조제1항 본문 중 “주민참여 감독자”를 “주민참여감독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07조에 따라 공사, 용역,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~ ⑤ (생략)

제12조(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)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영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0억원 이하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.

제14조(수당 및 여비 등) ① 위원회의 위원, 관계전문가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다만,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,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(생략)

----- 경우에는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-----
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14조(수당 및 여비 등) ① -----
----- 주민참여
감독자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